

나. 주요골자

○자치행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(안 제4조제1항)

○건설교통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함 (안 제8조제1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5. 5. 10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5월 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5월 6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50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5. 10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승용차요일제의 확산 · 정착을 위하여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 (안 제3조제1항)

-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 부여

-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및
요금 할인

- 경품 및 기념품지급
 - 아파트단지 주차증·요일제 검용스타커 발급
 -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경품지급 인원, 대상자 선정, 시기, 기준과 기념품 지급 기준 (안 제3조제2항)
- 경품지급 인원은 1회 10인 이내로 하되,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 - 경품지급 대상자는 전산추첨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한다.
 - 경품지급은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하되,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 - 경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품목별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 - 기념품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--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○ 조 기 태 위원회 수정안 동의

6. 修 正 案 의 要 旨

○ 수정이유

- 안 제3조제1항제3호 “경품 및 기념품 지급”은 사행심 조장 및 선거법 저촉 여지가 있어 삭제함.
- 안 제3조제1항제5호 “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”은 조문내용이 포괄적이고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법이 불분명하므로 삭제함.
- 안 제3조제1항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현행 동항 제4호를 제3호로 함.
- 안 제3조제2항 “경품지급 인원 및 기념품 지급기준”은 제3조제1항 제3호 “경품 및 기념품 지급”이 삭제됨에 따라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삭제함.

○ 수정안 본문

안 제3조제1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.

3. 경품 및 기념품지급
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제3조제1항중 제4호를 제3호로 함.

4. APT단지 「주차증·요일제」 겸용스티커 발급

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②제1항제3호의 경품지급 인원 및 기념품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경품지급 인원은 1회 10인 이내로 하되,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2. 경품지급 대상자는 전산추첨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한다.
3. 경품지급은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하되,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4. 경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품목별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5. 기념품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한다.

3. 경품 및 기념품지급
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안 제3조제1항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4. APT단지 「주차증·요일제」 겸용스티커 발급

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②제1항제3호의 경품지급 인원 및 기념품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경품지급 인원은 1회 10인 이내로 하되,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
2. 경품지급 대상자는 전산추첨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한다.
3. 경품지급은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하되,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

4. 경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품목별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5. 기념품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
제3조(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)	제3조(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)
①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	①----- ----- -----
1.-2. (생 략)	1.-2. (현행과 같음)
3. 경품 및 기념품지급	<삭 제>
4. (생 략)	3. (현행 제4호와 같음)
5.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	<삭 제>
②제1항제3호의 경품지급 인원 및 기념품 지급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.	<삭 제>
1. 경품지급 인원은 1회 10인 이내로 하되, 동일인에게 연 2회 이상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.	
2. 경품지급 대상자는 전산추첨의 방법을 통하여 선정한다.	
3. 경품지급은 수시로 홍보하고 실시 하되,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.	
4. 경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, 품목별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
5. 기념품은 1만원 상당의 물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	